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6~20
----------	---------

제출연월일	2006. 4. 12.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정이유

-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고, 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시정하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장(경리관)1인을 포함한 9인 이내
- 나. 계약심의위원회 임기(안 제3조).
 -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2년, 연임가능
- 다.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안 제4조).
 -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한
- 라.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
 -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 운영
 - 위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
- 마.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안 제8조, 제10조).
 -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 군수는 그 사항을 반영
- 바.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정함(안 제12조).
 - 주민참여대상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상한금액 : 일반(전문)공사(전기·소방포함) 추정가격 400억원 이하
- 사.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106조 내지 제109조

▶ 표준안 : 도 회계과-177(2006.01.04)

나. 예산조치 : 추경확보예정

다. 기 타

(1)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입법예고(2006. 2. 16 ~ 3. 6)결과 : 의견제출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106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과 영 제60조제2항,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본청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 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

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제12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일반(전문)공사(전기.소방 포함)	추정가격 400억원 이하	

【별표2】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한 금액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한 금액	